

승단의 화합실현과 지도자의 역할

— 사분율행사초·자지기를 중심으로

손성우

덕문(德文),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grinnae@nate.com

I. 들어가는 글

II. 승단의 화합

III. 지도자의 역할

IV. 마치는 글

요약문

승단이 화합을 실현하며 운영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승단을 운영하는 지도자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분율행사초』와 『사분율자지기』에서 도선과 원조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승단이 화합하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며, 화합승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정대중 및 도량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위에 화합승가를 유지하는 각종 갈마를 여법여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지도자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범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와 범계에 대한 거갈마(擧羯磨)와 갈마를 푸는 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공양물의 분배나 승제(僧制)로 시행된 비법갈마의 사례들을 통해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승가시스템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임자가 의지사이다. 의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승단구성원은 승단운영을 위한 각종 갈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청정화합승가의 유지를 위한 각종 갈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계종승가의 경우 교육의 부재로 이러한 시스템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정승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저술이 도선의 『사분율행사초』이며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 원조의 『사분율자지기』이다. 이 저술은 송대 이후에 중국불교나 한국불교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민국 때 홍일(弘一)올사가 『四分律行事鈔資持記扶桑集釋』이라는 저술을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만불교의 계율도량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대만불교의 부흥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부러운 일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부러움을 만들어낸 기초가 바로 『사분율행사초』와 『자지기』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활용을 통해 한국불교도 화합승가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감동과 공경으로 승가를 대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제어

승단(僧團), 화합실현, 비법갈마, 화합(和合), 결계(結界), 출죄(出罪), 별중(別衆), 화상(和尚), 의지사(依止師), 거갈마(擧羯磨)

I. 들어가는 글

여법여율한 승단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청정성을 잃지 않은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모여서 사안에 따라 행하게 되는 각종 갈마이다. 청정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각자의 청정성 유지와 그 화합체인 승단이 청정성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승단을 여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청정성을 유지하고 여법하게 각종 갈마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각종 갈마를 집행할 수가 없고, 설사 갈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법갈마가 되면 갈마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정성에 문제가 있는 비구가 갈마를 집행하게 되면 갈마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마를 신뢰하는 대중이 적을 것이고, 각종 갈마를 행하는 정확한 법도(行事)를 모르면 비법갈마를 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승단은 자주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게 될 뿐만 아니라 화합승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부처님의 교법까지도 배척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합승가의 유지가 중요하며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와 안목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조계종승가는 계율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갖춘 종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승단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청정성의 유지, 화합승가의 구현, 청정도량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법(正法)을 지니고 악인(惡人)을 꾸짖고 별하게 되면 불법이 다시 흥하고 복덕이 오랜 세월 유지된다¹⁾’고 강조한 도선의 말처럼 여법여율한 승가시스템을 잘 알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도들에게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 청정성을 유지하게 하며 악인을 꾸짖고 별하는 일을 잘 하는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존재이며 불법을 지켜내는 소중한 일꾼이라 생각한다.

II. 승단의 화합

1. 청정성의 유지

불교의 교리체계에서는 다양한 화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율장에 명시되어 있는 화합에 관한 내용으로는 ‘승단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승단구성원 전원이 사안이 있을 때 참석해서 논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원이 찬성해야만 여법한 갈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서 문제해

1)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 p29.7-8), 正覺精舍恭印, ‘持於正法謫罰惡人 佛法再興福流長世’

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갈마는 전원참석과 전원찬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처럼 화합된 승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청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며 승단의 합법성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승단구성원 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수계를 통해 자격을 갖추는 일과, 수계 시 지키기로 약속한 계목을 잘 지켜내는 일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 포살과 자자 및 각종 갈마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 이처럼 청정성을 유지하며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중을 청정대중이라 할 수 있으며, 청정대중은 결계를 여법하게 하고 그 결계 안에서 여법한 갈마를 해야만 각종 갈마가 그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청정승가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정승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비구·비구니는 수계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계를 했을 경우에 그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3중난과 16경차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계를 했거나 수계를 해주는 계사스님에게 청정성의 문제가 있어도 수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결계를 하지 않고 수계를 해도 수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여법하게 갈마를 하지 않아도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백사갈마를 해야 하는 갈마를 백이갈마로 한 경우나 수계화상의 족수가 부족한 경우도 비법갈마의 사유가 된다.

수계화상의 부정에 대해서는 수계자가 화상의 부정을 몰랐을 때는 계체가 이루어져서 수계가 성립되며, 부정에 대해 알았어도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수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수계화상의 파계가 수계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계한 경우에는 그 수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절하게 수계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수계를 하게 되면 계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여법하게 수계를 하고 보름마다 포살을 해서 청정성을 확인하고, 범한바 오편칠취의 범계사실에 대해서는 참회와 출죄를 통해 청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화합승가의 구현

청정성을 갖추고 있는 승가구성원이 4인 이상 모여서 화합하며 동주(同住)하는 승가를 화합승가라 한다. 4인을 갖추지 못하면 청정성에 문제가 없어도 화합승가라 하지 않고 별중(別衆)이라 한다. 4인 이상이 모여서 화합하는 모습을 갖춘 승가라 하더라도 만약 결계를 하지 않았거나, 안거를 하지 않았거나, 의지사를 모시지 않고 정진하는 승가는 청정화합승가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만약 무량한 스님들이 금계를 파했으나 다만 다섯 사람의 비구가 청정하고 여법하면 그에게 보시하는 자는 무량한 복을 얻으니 그 양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수를 계산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불법을 호지한 자인 까닭이며, 일체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까닭이며, 그 마음이 평등하여 두 모습이 없는 까닭이다.’²⁾

라고 청정성을 갖춘 화합승가를 찬탄하셨다. 『대지도론』에서는

‘불법제자는 함께 머물며 화합해야 하며 첫째는 현성설법(賢聖說法)을 행하고, 둘째는 현성묵연(賢聖默然)을 행해야 한다. 현성설법은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것이고 현성묵연은 곧 반야 심이다’³⁾

라고 했으며, 『사익경』에서는

‘너희들이 모이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하는데 성스러운 설법과 성스러운 묵연을 하는 일이다. 무엇이 성스러운 설법이며 성스러운 묵연인가? 부처님을 어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승을 어기지 않는 것을 성

2) 『大方等大集經』31권(호법품. 大正.13권,p215中27) ‘若無量僧悉破禁戒 但令五人清淨如法 若有施者得福無量 不可稱量不可計數 何以故 以有護持佛法者故 憐愍一切衆生故 其心平等無二相故’

3) 『大智度論』77권(釋夢中不證品. 大正25.p601上24-) ‘佛勅弟子 若和合同住 常行二事 一者 賢聖默然 二者 說法賢聖默然者是般若心 說法者說般若波羅密’

스러운 설법이라 한다. 법은 옳은 법이어야 하고 무위가 곧 승(僧)임을 아는 것을 성묵연이라 한다⁴⁾

라고 화합승가의 구성원이 행해야 할 일들을 밝히고 있다.

성설법(聖說法)은 승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갈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갈마를 통해 청정승가를 구성하고 갈마를 통해 각종 과오를 참회하며, 수계갈마를 통해 현성위를 증득하기 때문에 현성승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각종 갈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승가구성원 전원이 모여서 전원이 찬성하는 형식의 갈마를 하는 방식으로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3. 청정대중 및 도량의 중요성

청정한 대중은 수계를 통해 그 자격을 얻고 설계와 화합을 통해 청정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청정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결계(結界)이다. 결계를 통해 부처님 도량이 만들어지며 이 도량에서 각종 갈마가 이루어져야 여범갈마가 된다. 결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크다. 『사분율행사초』에서는 『소법멸진경(小法滅盡經)』을 인용하여 결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겁화가 일어난 때에도 일찍이 만들어진 승가람은 불에 타지 않으며 금강륜을 이루게 되니 계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⁵⁾’라고 그 개념을 밝히고 있다.

결계는 자연계와 작법계로 나누며 규모별로는 소계와 대계로 나눌 수 있다. 대계의 최소단위는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고 최대 규모 3유순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5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자자(自恣)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3유순 이상이 되면 갈마에 참여하기에 부

4) 『思益梵天所問經』3(論寂品, 大正15권, p50中10~), ‘汝等集會 當行二事 若聖說法 若聖默然 何爲說法 爲默然 不違佛 不違法 不違僧 是名聖說 若知法即是法 無爲卽僧 名聖默然也’

5) 『小法滅盡經』경전의 이름은 있으나 내용의 출처는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行事鈔』에 인용된 내용을 참고로 함.

담스러운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계장·정지·정주 등의 소계를 결계해서 활용했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계장은 수계식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이 수계의식에 참여하고 다른 대중은 각자의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때 소계를 결계하지 않으면 전체대중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대중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법갈마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대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원칙을 준수하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계 안에 소계를 결계해서 정지와 정주 등을 대계 이외의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소계법이다.

결계 안에서 청정한 대중이 수행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대집경』³¹ 권에서는

만약 한 사찰에서나, 한 마을에서나, 한 숲에서 다섯 법사가 머무르며 건추를 쳐서 사방의 대중을 모으거나, 객승을 모으고 나서 차레대로 공양물을 공급함에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초저녁에서 늦은 밤까지 독송을 하거나 강론하고, 생사윤회를 싫어하고 조심하며, 타인의 단점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적게 하며, 그 마음을 고요하고 조용히 하며, 정념과 정정을 닦고, 중생을 연민히 여기며, 계를 보호하고 참괴할 줄 안다면 이를 대중이 여법하게 큰 공덕의 바다에 머무는 것이라 한다. 만약 한량없는 출가자가 계를 파하더라도 5인이 청정하고 여법하게 불법을 보호해 지니고, 모든 중생을 연민히 여긴다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⁶⁾

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정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 조계종승가의 경우에는 계율교육이 크게 부족한 인연으로 그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실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大集經』31 권(護法品, 大正13, p215中15), ‘若一寺一村一林五法師住 鳴椎集四方僧 客僧集已 次第賊給 無有吝惜 初夜後夜讀誦講論 厭患生死 不訟彼短 少欲寂靜 修於念定 憐愍衆生 護戒慚愧 是名衆僧如法住大功德海 若無量僧破戒 但令五人 清淨如法護持佛法 愍諸衆生 福不可計’

III. 지도자의 역할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불법전승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임자가 화상(和尚)이다. 화상이 어떠한 수준의 계율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승가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계종승가는 선종을 표방하는 관계로 깨달음의 방법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계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지중심의 지도자 역할이 아닌 계율중심의 지도자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율장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로 지도자의 자격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도자의 자격

율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도자는 화상(和尚), 아사리(阿闍梨), 의지사(依止師) 등이다. 화상은 계율에 밝은 승랍이 10하 이상인 스님이며, 아사리는 5하 이상의 승랍에 후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아사리 가운데 의지사(의지아사리)는 10하 이상의 승랍에 그 대중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갈마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사분율행사초』에서는

반드시 대중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할 때의 주지나 호법자는 모름지기 스스로의 행을 청정히 하고 삼갈 것이며, 바른 지조를 견고하고 굳게 하고, 율의 법상에 밝게 통달해야 한다. 아울러 대·소승에 밝아야 하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대해 잘 살펴 알아야 하고, 사물의 본성을 궁구해 통달한 사람이어야 한다.⁷⁾

7)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8下2-4), 正覺精舍恭印, ‘必欲網衆於時住持護法者 須自行情慎雅操堅貞 博通律相兼明二乘. 識覽時要達究情性者’

라고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의지아사리는 화합승가가 모여서 결계를 하고 안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계율에 밝은 10하 이상의 스님을 의지사로 모시고 안거를 해야 하는데 안거 도중에 의지아사리가 입적했을 경우에는 대중 가운데서 의지아사리를 뽑아 모셔야 하고, 대중 가운데서 모시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대중에서 모셔 와야 하며, 모셔오는 일이 어려울 때는 전체 대중이 옮겨가서 안거를 해야 안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분율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즉 안거를 성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의지아사리를 모시는 일이고 그 대중에서 선지식의 역할을 하는 분이 의지아사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족계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경우라 할지라도 계율에 밝지 못하면 의지사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의 비구는 승랍은 많지만 법도에 어두운 비구라는 의미로 연소비구라 한다.

『사분율행사초』(승망대강편)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대중은 노숙대덕을 귀하게 여긴다. 힘써 인도하여 이끌어 주는 것으로 바야흐로도에 나아갈 수 있다. 반드시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권속을 거두며, 우매하게 스스로를 지키려고 모이면 서로에게 늘 이익이 없으니 년소(年少)라 부른다. 그러한 까닭에 『사분율』49권(니건도)에서 아난의 머리칼이 백발이지만 가섭이 년소(年少)라 부른 것이다.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 무리들은 실계(失戒)하려 하느냐!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구들이구나. 모두가 육근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워 만족할 줄 모르고, 이른 밤에서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온 동네를 쏘다니며 다만 하는 거라고는 음식을 축내는 것밖에 없으니 너희 무리들은 반드시 계를 잃게 될 것이다⁸⁾’

라고 했는데 아난이 법상(法相)을 잘 알았음에도 배운 것이 없다고 오히려 꾸

8) 『四分律行事鈔資持記』,7권(僧網大綱篇p57下6~58上),正覺精舍恭印,‘然衆貴老宿大德 自力牽課方能進道 必不自知妄攝眷屬 愚業自守不相長益 號年少也 故律中 阿難頭白而迦葉號爲季少 詞言 汝衆欲失 汝季少比丘 俱不善閉諸根 貪不知足 初夜後夜不能勤修 遍至諸衆但行破殺 汝衆當失’

짓음을 당했던 예를 참고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 없이는 비록 법랍으로는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년소비구를 면치 못해 오히려 의지사를 의지해 살아야만 한다.

2. 지도자의 역할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스님을 지도자로 뽑아 각종 갈마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범계에 대하여 참회하고 벌을 받는 방법, 갈마를 푸는 방법, 공양물의 분배, 각종 수계와 설계, 각종 분쟁을 풀어나가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일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을 밝게 보고 법적용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에 초연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지도자가 답파마라 존자이다. 그는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나서 대중을 위해서 소임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서 방사와 와구를 지급하는 소임을 맡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회심아라한이 되어 보살도로 나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범계에 대한 처벌

(1) 범계의 예방

범계의 처벌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함께 정진하는 대중에게 각종 범계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하여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절일을 맡아 보는 대덕이나, 한 사찰의 주지나, 법을 수호하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비니모경』에서는

잘못을 간별하는 사람이 갖추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참괴심이 없고, 둘째는 널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셋째는 타인의 잘못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고, 넷째는 쟁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섯째

는 도 닦는 일을 그만두려는 사람이다⁹⁾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반대되는 사람이 소임을 맡아야 대중이 편안하고 각종 갈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꾸짖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잘못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잘못을 이야기해야 한다.’¹⁰⁾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을 시인하고 수순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분유행사초』에서는

만약 대중 가운데서 허물이 있는 자를 보면 바로 꾸짖지 말고 가려진 곳으로 오라고 해서 낱낱이 지적해야 한다. ‘(대중이 생활하는) 이곳에서 대덕께서는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법시대에는 위의로써 승단을 유지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날리고 교화할 수 있으므로 대중 가운데 일행(一行)일법(一法)에도 수순하고 정묘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따르고 배우게 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타인에게 듣게 해서 좋지 못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겠습니까? 지금 대덕께서는 이러한 일이 착하지 못하여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바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성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후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일 따름입니다.’¹¹⁾

라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허물을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 지적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청정승가의 틀이 여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초하비구라도 장로의 허물을 지적해 주고 장로는 이를 고맙게 수용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승가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장로스님들이 버릇없다 여길까 두려워 감히 생각지도 못

9) 『毘尼母經』3권(大正24권p813下13), ‘能諫之人五法不須受 一無慙愧 二不廣學 三常覓人過 四喜聞諍 五欲捨道’

10) 『毘尼母經』3권, ‘必先於有過者 取欲然後諫之’

11)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6上5~10), 正覺精舍恭印, ‘若見衆中有過 不得即訶 命來屏處 一一誨示云此一方住處共大德有之 末法之中以威儀爲僧 方助佛揚化 若衆中有一行 一法勝妙者 令他處導學 豈得有過令他聞之 令生不善 自他兩失 今有大德某事 不善不依 佛制 願即改之 欲共相成進 以引導後生耳’

한 일이지만 대만의 정각정사에서 잠시 머물면서 초하비구도 당당하게 장로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장로도 이를 고맙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여법한 승가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분율행사초』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형제권속이나 대중의 도반들도 가거(訶舉, 舉揚磨)할 수 있으나 4인에 이르게 되면 할 수 없으니 대중을 거죄(舉罪)할 수 없기 때문에 비법(非法)으로 죄를 얻게 된다.’¹²⁾

라고 하여 개인적으로는 거죄가 가능하나 4인 이상의 대중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종 범계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육취(六聚)를 짓는 것을 본다면 가려진 곳에서 자세하게 그 허물을 지적해야 한다. ‘지금 대중과 함께 머무는 것은 모두 속세의 인연입니다. 다만 말법시대인 까닭에 장애가 많고 계를 지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답하되 ‘네, 사실입니다’ 하면 율에 의거하여 여법하게 가르치고 범계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두 가지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범했는데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범했는데 참회하지 않는 것이며,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반대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참된 공양이라 하는데 지금 순응하여 따르지 않으시고, 사마(邪魔)를 쫓으려 하고, 죄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고, 혹은 중한 업을 바꿀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불본행경』에서는 ‘한 생각이 악하면 능히 다섯 가지 불선문(不善門)을 연다고 했으니, 첫째 악은 능히 사람들의 선근을 태워 버리고, 둘째 악으로부터 악이 생겨나고, 셋째 성인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넷째 물러나서 도과를 잃게 되고, 다섯째 죽어서 악도에 들어가게 된다.’¹³⁾

12)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6下4~10), 正覺精舍恭印, ‘必是已之弟子眷屬同友對衆訶舉亦得不得立至四人以不舉僧也 非法得罪’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차 죄를 짓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

만약 죄를 짓게 될 경우로 생각되면 중주비구는 율장을 의지해서 말하기를 ‘대중스님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삼장(三藏)을 자세히 알아 큰 힘이 있게 되면 출가와 재가자가 흠모하며 우러러 볼 것입니다. 만약 바른 가르침에 어긋남이 있다면 반드시 거죄하여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하라.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말하기를 ‘다만 거죄하여 처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5사를 박탈하고, 또 왕래하고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대중과 함께 법사를 행하지 못하고, 나아가 부족승수(不足僧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보이고 나서도 만약 간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중을 모아서 화합하며 그를 거죄하라¹⁴⁾

고 했는데 이는 대중의 덕으로써 간곡하게 범계를 그만두고 여법해지기를 권한 것이다.

또한 수행력이 높고 계율에 밝은 지도자가 이끌어 주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는데 『사분율행사초』를 보면

그러나 대중을 노승대덕이 귀히 여겨서 자력으로 이끌어주면 바야흐로 능히 도에 나아갈 수 있다. 반드시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명령되어 권속을 거두며, 우매하게도 스스로를 지키려 모이면 서로에게 언제나 이익이 없으니 년소(年少)라 부른다.¹⁵⁾

-
- 13)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5下10~上1), 正覺精舍恭印, ‘若見造六聚罪者 屏處委示 今與同住 竝是宿因 但未劫多障 持戒者少 見造某罪 是實以不 答是實者 依律如法誨示 文云 有二種癡 一不見犯 二犯而不懺 有二種智 反上語之 隨佛語者 名眞供養 今不肯順 可欲從魔邪 罪不可積 或能轉重 餘經云 一念之惡能開 五不善門 一者惡能燒人善根 二從惡更是惡 三爲聖人所訶 四退失道果 五死入惡道等’
 - 14)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7上10~下3), 正覺精舍恭印, ‘若有將被罰者 衆主比丘 依律告云 衆僧可畏 見知三藏 有大勢力 道俗欽仰等 猶不捨者 又云 彼衆既大力 若有違犯正教 必舉治汝 又不捨者 應言 非唯舉治而已 更奪三十五事 不復往來 迎途同僧法事 乃至 不足僧數 如是種種示已 若不受揀 集衆和舉之’
 - 15)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57), 正覺精舍恭印, ‘然衆貴者 宿大德 自力#課方能進道 必不自知 妄攝眷屬 愚叢自守 不相長益 號季小也’

라고 경계해서 대중이 화합승가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중이 범계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범계에 대한 거갈마(擧羯磨)

누군가의 허물을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거갈마를 집행할 지도자를 뽑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별작갈마(別作羯磨)를 참고로 보면 대중에게 죄를 참회하는 경우와 안거 중에 결계 밖으로 나가는 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 대중에게 죄를 참회하는 부분을 참고로 『사분율』(차견도)에서 죄를 드러내는 경우를 보면

혹 어떤 사람이 거죄를 하였는데 거죄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여서 거죄한 사람을 불러서 대중에게 대답하게 하였다. ‘우선 묻겠습니다. 견·문·의 삼근에서 견이란 스스로 본 것과 타인이 본 것인데 보았다면 어느 곳에서 범했습니까? 범하였다면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계를 범했습니까? 범했다면 어떠한 계를 범했습니까? 올바른 견해를 깨트렸습니까? 깨트렸다면 어떠한 견해였습니까? 위의를 깨트렸습니까? 깨트렸다면 어떠한 위의였습니까?’ 이와 같이 거죄한 사람이 낱낱이 대답하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가 밝힌 바에 따라서 대중의 상·중·하와 거죄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의 자언(自言)을 취해 증명하고(그 내용으로) 거죄함을 다스려라. 만약 능히 답을 못하면 지혜 있는 자(衆主)는(그 내용에) 어긋남이 있다면 무고하게 비방한 죄에 따라서, 법에 의지하여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므로 『사분율』(차견도)에서 말하기를 만약 근거 없이 무여죄(無餘罪·4바라이)라고 하면 설계와 자자를 막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를 비방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라 했다.¹⁶⁾

16)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47下~p48上1), 正覺精舍恭印, ‘四分云 若有人擧罪者 不得輒信舉罪人語 便喚所告之人 對僧訓答 先問見聞疑三根 若云見者 爲自見從他見 見在何處 犯犯何等罪 爲犯戒耶 犯何等戒 破見耶 破何等見 破威依耶 破何等威依 如是擧罪人 一一能答 有智者者 方可隨其所告問衆上中下及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그에게 벌을 줌에는 반드시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억울함이 없게 하려면 어떤 때에 갈마를 하는가와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사분율행사초』를 참고로 우선 갈마를 하는 때를 살펴보면

무릇 事를 작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처리하는 일로써 법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치적으로 밝게 가려야 한다. 어두운 밤에 가리고 덮어지면 과오가 많이 일어나고, 혹 잠이 들어 의식이 혼미하거나 혹은 시끄럽게 말하거나, 앉고 섬의 위위가 어그러지거나, 곧 별중이 되거나, 혹은 부족수가 되어 대사를 폐하면 법을 어그러뜨려서 승법을 이루지 못하니, 진실로 가려지고 어두운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법을 공경하고 봉행하지 않게 된다. 행사를 부득이 하게 해야 하면 밤에도 할 수는 있으나 진실로 쉽지 않음을 알고 밝은 아침에 갈마를 해야 한다. 즉 옳고 그름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니 사안을 대함에 감히 경솔히 할 수 없을 것이다.¹⁷⁾

라고 가능하면 밝은 낮에 드러난 곳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야 의혹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상좌(上座)와 광치(狂癡)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상좌를 살펴보면

대개 법사를 시행하려면 먼저 지위가 높은 우두머리나 중주(衆主)나 상좌가 기준이 되어 다스러야 한다. 다만 비법을 보면 반드시 바로잡아 고치고, 묵연히 앉아서 죄과나 과실에 이르도록 해서 안 된다. 『승기율』(설계정의편)에 많은 종류의 상좌가 각기 모습을 나투어 인도함이 있다.¹⁸⁾

所犯人 取其言證正學治 若不能答 有知人隨有違者 便隨所言巫誘罪 依法治之 古文云 若舉無根無餘罪者 不成遮 治其謗罪'

17)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48下1~5), 正覺精舍恭印, '凡作法事所爲處重多有非法 理須照鍊 闇夜屏覆過起必多 或有昏睡 或復鬧語 威儀改節 便成別衆 或不足數 發闕大事不成僧法 良由倚旁屏闇 不祇奉法 事不獲已 夜乃爲之 辛知不易及明早作 則是非自顯 目對不敢相輕'

라고 『사분율행사초』에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초심자는 아직 수행이 깊지 못하고 널리 알지 못하며 선정력이 부족해서 여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수행하고 대중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수행자가 모범을 보인다면 그 감동은 커지게 된다. 상좌가 시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잘 단속하는 일을 보여준다면 그 승가는 여법하고 청정하며 화합된 모습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미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광치갈마를 해 주고 그러한 증세가 없으면 해갈마를 해주는 방법이다. 『사분율』36권(설계건도편)을 보면

세 종류의 광치(狂癡)가 있다. 첫째는 대중이 설계할 때 혹은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것이며, 둘째는 언제나 기억하지 못하여 오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기억하여 오는 것이다. 처음의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광치갈마를 줄 것이며,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은 갈마가 필요치 않다. 『사분율』가운데서는 (광갈마를 할 때에는)백이갈마로 하고 만약 광증이 그치면 직접 와서 광치갈마를 풀어주기를 구하면 백이갈마로 해갈마를 해 주고, 만약 다시 또 광증이 재발하면 앞에서 언급한 갈마법과 같이 해 준다. 만약 광증이 그친다면 오지 않아도 범하지 않는 것이니 앞에서 해갈마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땅히 속이지 말아야 하나니 미쳐있는 상태에서 해갈마를 하였다면 그 갈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⁹⁾

라고 광치갈마와 해갈마를 주는 용례를 기술하고 있다.

(3) 갈마를 푸는 법

승가에서 갈마를 하는 방식과 내용은 수없이 많다. 여법하게 갈마를 하기 위

18) 『四分律行事鈔資持記』,7권(僧網大綱篇p48下10~49上2),正覺精舍恭印, ‘凡施設法事 貴在首領 衆主上座先須約勒 但見非法即須糾正 不得默坐 致招罪失 僧訶中 多種上座各有示導’

19) 『四分律行事鈔資持記』,7권(僧網大綱篇p49上4~10),正覺精舍恭印, ‘有三種狂癡 一衆僧說戒或來不來 二一向不憶不來 三者有憶而來 初人須與羯磨 後二不須 四分中白二與之 若狂病止 令來乞解 白二爲解 若復更發 依前與法 若狂止不來不犯 以先得法故 亦不應許顛狂 而加法不成’

해서는 부처님께서 권하신 5년의 계율공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갈마를 언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치갈마 등의 갈마를 하고 상황이 변하여 그 갈마를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좌는 위에서와 같이 여욕과 화합을 말하게 하고 풀어주는 갈마를 진행하는데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모갑과 모갑 두 비구에게 대중은 가책갈마를 해 주었고 그 비구들은 대중을 따라 여기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대중스님들로부터 가책갈마를 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약 대중스님들께서는 때에 이르렀다면 승인하고 허락하십시오. 모갑과 모갑 두 비구에게 가책갈마를 풀어 주겠습니다.’하고 이와 같이 사퇴하여야 한다. ‘대덕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모갑과 모갑 두 비구에게 대중스님들이 가책갈마를 해 주었는데 그 두 비구들은 대중을 잘 따라서 여기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대중스님으로부터 가책갈마를 풀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 장로들 중 어느 누구라도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풀어주는 것을 승인하시면 묵연하시고 어느 누구라도 승인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 후) 대중스님들이 이미 승인하셨기에 모갑과 모갑 두 비구에게 가책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대중스님들이 묵연하신 까닭에 이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²⁰⁾

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가책갈마를 받은 사람은 승잔법을 기준해서 비구의 맨 아랫자리에 거처하게 하고 갈마해야 하며, 1인에서 3인까지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며 4인 이상은 할 수 없다. 빈출갈마를 풀어주는 경우에는 이미 빈출되어 계 밖에 있으므로 계 안에 쉽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며 계 밖에 있으면서 서신을 대중에게 보내서 빈출갈마 풀어주기를 구해야 한다.

20)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20上7~下4), 正覺精舍恭印, ‘上座如上 欲和解言 大德僧聽 比丘某甲某甲 僧爲作訶責羯磨 彼比丘隨順衆僧 無所違逆 今從僧乞解訶責羯磨 若僧時到 僧忍聽 解某甲某甲 二比丘責羯磨 白如是大德僧聽 此某甲某甲比丘僧爲作訶責羯磨 彼二比丘隨順衆僧 無所違逆 今從僧乞解訶責羯磨 誰諸長老忍 僧爲某甲某甲解訶責羯磨者 默然誰不忍者說(三說) 僧已忍舉 某甲某甲解訶責羯磨竟 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의지(依止)갈마를 풀어주는 법은

의지갈마를 주고 나서 법과 율을 아는 사람을 친근히 하며 율을 배우고
지범(持犯)을 명료하게 요달한 사람에게는 의지갈마를 풀어주라²¹⁾

했으며, 『사분율행사초』(사자상섭편·師資相攝篇)에서는

우매하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자는 목숨이 다하도록 의지해야한다

라고 했고 『십송율』21권에서도

계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오법(五法:①범함을 알지 못하는 것 ②
범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것 ③범의 경을 알지 못하는 것 ④범함의 중
을 알지 못하는 것 ⑤계본을 외우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목숨이 다
하도록 의지하라²²⁾

하였고, 『비니모경』에서는 백세의 범람일지라도 법을 알지 못하면 십세의 범
람에게 의지하라고 밝히고 있다.

계율공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조계종 승려는 어쩌면 의지사를 의
지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각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오법을 알지 못하면 평생 의지사를 의지하라고 하였는데 오법을 얼
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모두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의지갈마를 풀어주
는 일도 다른 해갈마를 기준해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면 된다.

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는 재가인과 비구 간의 일로 비구가 문제
를 일으켰을 경우에 하는 갈마인데 갈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21)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23下9~10), 正覺精舍恭印, ‘與依止已 親近知法律人 學知毘尼 明
達持犯者 當爲解之’

22) 『十誦律』권21(大正23.p149中19~22), ‘滿十歲應授共住弟子具足 何等五 一知犯 二知非犯 三知罪輕 四知
罪重 五知誦波羅提木叉’

“대덕스님네는 들으소서. 이 선법비구가 질다거사는 믿음을 즐거이 하는 단월로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스님들께 공양하였거늘 하천하고 악한 말로 그를 욕하였습니다. 만약 스님들이시여 때에 이르렀다면 스님들께서는 승인하시고 허락하소서. 이제 선법비구를 위하여 차부지백의 가갈마를 하겠습니니다. 이와 같이 백(白)합니다”

하고 갈마법에 기준하여 하여야 한다.²³⁾

이처럼 차부지백의가갈마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마땅히 백이갈마로 여덟 가지 법을 갖춘 이를 뽑아야 하니, 첫째 다문이요, 둘째 능히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말한 내용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넷째 능히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잘 이해시키며, 다섯째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으며, 여섯째 능히 생각을 잘 기억하고 지닐 수 있으며, 일곱째 과실이 없어야 하며, 여덟째 선악을 잘 이해하여 비평할 수 있는 자이다. 갈마 받은 이를 데리고 믿음 있는 속가에 이르러 말하기를 ‘단월에게 참회합니다. 승단이 모갑에게 벌을 주어 마쳤습니다’ 만약 속인이 기뻐하면 곧 모갑비구에게 해갈마를 해준다.²⁴⁾

이때 참회하는 방법은 만약 참회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응당 비구에게 거사를 눈으로는 보이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게 하고, 갈마비구가 눈에는 보이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법하게 참회를 하게하고, 다시 거사에 참회를 했다고 가서 말한다. ‘저 비구가 먼저 죄를 범하였는데 이미 참회를 하였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거사가 받아들이면 좋으나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범죄비구는 스스로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이때 속인이 기뻐

23)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34上4~7), 正覺精舍恭印, ‘大德僧聽 此善比丘 質多居士 信經檀越 常好 布施供給衆僧 而以下賤惡罵罵之 若僧時到 僧忍聽 今爲善法 作遮不至白衣家羯磨 白如是(羯磨準作)’

24)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34上9~下4), 正覺精舍恭印, ‘當白二 差一比丘 具八法者 一多聞 二能善說 三說已自解 四能解人意 五受人語 六能憶持 七無有關失 八解善惡言議者 將被治人至信俗家語言 檀越懺悔 僧已爲某甲比丘作譴罰竟 若俗人歡喜 卽爲解之’

하면 해갈마를 해 준다.

이처럼 해갈마는 어떤 범계사실에 대해 갈마를 하고 참회 등을 통해 그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해갈마를 통해 원래 청정한 상태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2) 공양의 분배

부처님께서서는 늘 안거를 마치고 찾아오는 제자에게 음식으로 인한 불편은 없었는가를 물으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육계중생은 모두 음식의 도움으로 몸과 생명을 유지하므로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유대사는 『사분유행사초』에서 음식의 관리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절은 시방의 일체 승려들이 도를 닦는 경계의 법다운 곳이며 시방 일체 승려들이 와서 공양을 받는 곳이다. 너와 나가 없고, 주인과 객이 없으며, 대중의 이치에 화합하고 함께 불법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 가운데 있는 음식은 대중의 물건으로 모두 시방의 범부와 성인에게 공양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써 종을 울려 작법해서 널리 대중을 모으고 동시에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단월에게는 복이 생겨나는 발이 되어 주고, 여법하고 때에 맞아서 모두 막거나 장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에는 통하고 막힘이 있다. (시방대중은 자신 음식의 분량이 있으면 때에 맞추어 와야지 반드시 부르지는 않으며 재가자와 시주자도 또한 먹을 수 있으니 이를 통이라 말한다. 때 아닌 때에 오면 주지 말아야 하니 이는 법으로 막은 것이다) 오직 도리에 의지해서 그것을 행하고 함께 불법을 보호한다면 시주의 일을 훼손치 않을 것이다. 근본은 인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치가 쫓거나 등짐이 없다. (인정으로 공양하러 오라고 부를 수 없고 인식하여 쌓아둘 수 없으며, 계획해서 훗날을 위해 남겨둘 수 없으며, 나아가 친하거나 소원한 마음을 품을 수 없으니 마땅히 주고 나서서는 달을 것이며, 주고 나서 다시 열지 말아야 한다)²⁵⁾

25)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38下3~39上1), 正覺精舍恭印, ‘寺是十方一切重僧修道境界法 爲待一切僧經遊來往受供處所 無彼無此無主客 僧理平等同護佛法 故其中飲食衆具悉是供十方凡聖同有鳴鐘作法晉集僧衆 同時共受 與檀越作生福之田 如法及時者 皆無遮礙 然法有通塞(十方衆僧自有食分 依時而來 不須召喚 白衣及中能齊者亦得 此謂通也 不能受齊非時來者 不與法宜塞也)’

그러나 근래의 한국불교의 승가는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결계에 대한 이해와 현전승가·사방승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이를 여법하게 적용해서 승단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생긴 일일 것이다. 종을 쳐서 대중이 모이면 공양을 해야 하는데 종을 치지 않거나 종을 치기 전에 대중의 음식을 먹으면 시방승가의 음식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공양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고 찾아오는 객은 무한히 많은데 유한한 음식으로 무한한 스님들께 음식을 공급하려 하니 이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니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이는 곧 비루하고 속된 이의 알팍한 견해이며 소인배의 짧은 생각일 뿐이다. 어찌 청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깊은 식견이며 통달한 승려의 높은 생각이겠는가? 대개 사배(천인·사람·용·귀신)의 공양은 삼보의 복진이니, 오직 하늘과 땅이 낳고 기르며 산과 바다가 거두어 쓰는 것이니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장경』에 말하기를 ‘마땅히 한 마음으로 도를 행하고 법행에 수순하며 옷과 음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유념치 말라’고 한 것은 여래백호상 가운데 일분으로도 일체 출가한 제자에게 옷과 음식을 공급할 수 있기에 다함이 없다. 이런 까닭에 부지런히 계행을 닦고 지극한 정성으로 법을 보호하며, 불법으로 이익을 얻고 불법이 통용되게 하며 절마다 문을 열어서 가는 곳마다 함께 공양하게 하니 반드시 모두가 만족할 것이며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²⁶⁾

唯有任道行之同護法者 不損檀越事也 本非人情 理無向背(不得仁情口召來食及慳惜積聚計留後日 乃至懷疎之心 應與而閉 不應與而開也)

26)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40下1-41上5), 正覺精舍恭印, ‘僧事有限 外客無窮以有限之食 供無窮之僧事必不立 此乃鄙俗之淺度 瑣人之短懷 豈謂清智之深識 達士之高見 夫四輩之共養三寶之福田 猶天地之生長 山海之受用 何有盡哉 故佛藏經言 當一心行道 隨順法行 忽念衣食所順者 如來自亭相中 一分供諸一切 出家弟子 亦不能盡 由此言之 勤修戒行 至誠護法 由道得利 以道通用 寺寺開門 處處同食 必當供足 判乏之’

라고 하여 모든 공양을 평등하게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 말아야 하거나 주의해가며 주어야 할 경우도 있다.

‘요컨대 지계인에게 주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나 파계자에게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오분율』22권에서는 악(惡)비구가 오면 마땅히 주지 말라고 하였다.’²⁷⁾

그리고 『십송율』14권과 『살바다부비니』10권에서는 ‘외도가 오면 대중의 음식을 주는 것은 불범이나 다만 자신의 손으로 줄 수 없으니 이는 외도가 항상 비구의 단점을 엿보고 있는 까닭이다’라고 했으며, 『사분율행사초』에서는 공양청의 자격에 대해

지금 승가람에서 승차청으로 공양할 스님을 뽑는데 있어서 객승을 가려낸다면 이 승차는 도리어 월차라 한다. 이는 객승에게 마땅히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주인이 바라 이를 범하는 것이며, 같은 생각으로 따르는 자가 있다면 모두 도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주처는 승가의 처소라 할 수 없으며 객과 주를 끊어 간별하므로 함께 화합하는 승가의 뜻에 어긋난다.’²⁸⁾

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본토나 대만의 사찰들을 순례하다 보면 공양하는 오관당에 매일 공양을 올리는 단월들이 공양 후에 대중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소임자는 인사 올리는 단월의 공양물로 공양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양금이 있으면 상주대중이나 객승이 균등하게 공양금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 또한 한국불교에서는 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속히 복원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27) 『四分律行事鈔資持記』,7권(僧網大綱篇p45下8-9),正覺精舍恭印, ‘要是持戒人不與犯罪 破戒者不犯 律云惡比丘來不應與’

28) 『四分律行事鈔資持記』,7권(僧網大綱篇p46上6-9),正覺精舍恭印, ‘今僧寺中有差僧次請而簡客者 此僧次翻名越次也 卽令客僧應得不得 主人犯重 隨同情者多少通是一盜 又此住處不名僧所 以簡絕客主 非同和僧義’

한편 국왕, 대신, 작인, 악적, 속인, 정인을 대접하는데 있어서도 지나친 면이 있는데 이를 용납한다면 흠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자지기』(수계석상편)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왕과 대신에게 공급할 때 19전(十九錢)을 사용하면 대중에게 밝힐 필요가 없으나 다시 공급을 구한다면 반드시 대중에게 밝혀야 한다. 작인에게는 공을 헤아려서 공급해 줄 것이며, 악적에게는 원하는 대로 주어야 하고, 속인은 다섯 가지로 나누니 삼보에 귀의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줄 것이며, 선법을 통달하고 식견이 높은 믿음 있는 거사에게는 승가의 음식은 소화하기 어려움을 설명해 주라했으며, 오랫동안 심부름한 사람(淨人)에게는 잘 보고 상하를 나누어 음식을 주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게는 항상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라.²⁹⁾

라고 차등을 두어서 나누어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공양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법은 의외로 복잡하고 중요하다. 그밖에도 망승의 유품을 분배하는 법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율장에 언급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현재로는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현전승가와 사방승가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승가 구성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져야 한다. 토굴 등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식주의 불안이 없어야 하는데 그 해답은 율장을 통해 제시한 승가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승가시스템을 복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각종 갈마를 주관하는 스님들이 계율에 밝고 사심 없이 여법하게 갈마할 수 있으며 법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29)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47上5~10), 正覺精舍恭印, ‘供給王臣 用十九錢 不須白僧 更索須白僧 作人者 量功與之 惡賊者 隨時將擬 俗人者 五分悠悠無信者好器與食 達食信士 說食難消等 淨人者 善見分番上下者 當番與食 長使者常供衣食’

3) 승제(僧制)로 시행한 비법갈마

승단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승제(僧制)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에조차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불멸후 제정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아졌는데 청구의 경우도 승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여법하게, 혹은 비법으로 제정되어 운용되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승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를 『행사초』를 통해 설명했는데 도선스님 당시의 비법적인 승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술을 마시고 취하여 위아래를 가버어 여간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벌금으로 쌀이나 다른 재물을 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합의했으나 후에 곧 어겨서 벌금 등을 보내지 않아 더욱 중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었다. 혹은 매질을 하거나 칼로 구금하거나 쇠사슬을 채우기도 하고, 혹은 재물과 비단을 빼앗아 대중에게 바쳐서 쓰게 하거나, 혹은 힘든 일을 시켜 땅을 갈거나 초목을 자르고 땅을 갈게 하거나, 벼를 심고 곡식을 베게 하거나, 혹은 오래도록 일을 하게 했다. 혹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경우 몇 배로 배상하도록 했다. 혹은 계를 깨트리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으니 매년 차례대로 화전을 일구어 땅을 개간하고, 벼를 심고 곡식을 베거나, 대중의 먹을 것이나 대중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거나, 술과 고기를 찾거나 정인을 중매하거나 노비와 가축과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나, 혹은 비법의 제도를 행하는 것이니 허물과 죄가 있는 이를 알몸이 드러나게 해서 대중앞에 세우고 땅에 엎드리게 해서 재를 붓거나, 대중이 곤장을 치게 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³⁰⁾

30)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34上8~下9), 正覺精舍恭印, *飲酒醉亂 輕欺上下者 罰錢及米 或餘貨賸 當時同和 後便違拒不肯輸送 因茲犯重 或行杖罰 枷禁鉗鎖 或奪財帛 以用供衆 或苦役治地 斬伐草木 鉏禾收殺 惑周年苦役 或因遇失奪 便令倍償 或作破戒之制 年別依次鉏禾殺穀 若分僧食及以僧物 科索酒肉 媒嫁淨人 賣買奴 婢及餘畜產 或非法之制 有過罪者 露立僧中 伏地吹灰 對僧杖罰 如是衆例 皆非聖旨*

이는 오늘의 우리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울장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인데 중국 송나라 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자지기』를 기술한 원조스님은

현재 선종의 대중들이 계상(戒相)을 알지 못하여 널리 승단의 대중들이 모여 풀을 캐고 음식을 만들며 세간에 전해지는 것을 들어서 자랑스러운 제도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나쁜 풍속들이 오래되고 무르익었으니 누가 이것을 고치랴.³¹⁾

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율에 어두웠던 선배스님들이 권장하는 법대로 수행하는 승단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법이 계속되는 이유로서 『사분유행사초』에서는

진실로 유나가 범망을 의지하지 않고 함께 화합해서 갈마를 한 까닭이다. 악업은 깊어지나 깊이 참회하지 않는다. 중주(衆主)에게 힘이 있으면 비법의 무리들이 많아지고, 여법비구는 상법·말법시대에 또한 적으니 비록 대중 가운데 삼근과 오덕을 갖춘 비구가 있어도 비법의 무리들에게 시행할 수 없음을 부처님께서 미리 아신 까닭에 함께 갈마를 하지 않도록 하셨다.³²⁾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마하승기율』에서는

만약 승단에서 비법갈마를 짓는다면 응당 꾸짖어 멈추게 해야 한다. 멈

31) 『行事鈔資持記』, 권7, p35 上 6~7, ‘卽今禪衆 不知戒相 普集僧衆 擇菜造食 舉世盛傳 #爲正則 流弊斯久 孰爲改之’

32)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 p35 下 3~5), 正覺精舍恭印, ‘良由網維 不依法網 同和而作 惡業深纏 永無改悔 衆主有力 非法伴多 如法比丘 像末又少 縱有三五 伴勢無施 故佛預知有不合同法’

추게 하지 못하면 마땅히 여법하게 위임을 말하고 일어나 가야 한다. 만약 대중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있어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비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3인이 뜻을 같이하면 멈추어야 한다.(4인 이상이면 대중이 되므로 파당을 염려한 것이다.)³³⁾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십송율』에서는

만약 승가람에서 제한한 것이 있는데 자신과 타인에게 괴로움이 있을 것을 알고 힘써 없애고자 한다면 대중에게 사뢰어 그 제한을 없앨 것이며, 없애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라. 만약 여법하게 제정된 것이라면 마땅히 받아 들여야 한다.³⁴⁾

라고 했으며, 『사분율』(법건도)에서는

‘객비구를 위해서 객비구법을 제정하기를 허락하니 저 객비구는 응당 수순해야 한다.’³⁵⁾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승제를 여법하게 제정하여 생활의 불편이 없게 잘 사용하길 바라는 의미의 말로 볼 수 있다.

33) 『行事鈔資持記』, 권7, p35下9~36上1) ‘若作非法制者 應訶令止 不者當說如法欲已起去 若衆中有力者不聽當語旁人言 此非法制 止得三人’

34) 『四分律行事鈔資持記』, 7권(僧網大綱篇p38上)2~3), 正覺精舍恭印, ‘若僧寺中有制限者 若知有惱自他 力能滅者 白僧滅之 不者餘處去 若如法制應受’

35) 『四分律』49(大正22,930下,18~20) ‘聽’爲客比丘 制客比丘法 彼容比丘 應隨順客比丘法’

IV. 마치는 글

「승단의 화합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법한 수계와 포살·자자·안거 등이 필수적이며 승가구성원 전원이 화합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데, 결과는 이러한 각종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조건이 된다.

지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마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스님들을 계율에 밝은 스님이라는 의미로 『속고승전』에서는 <명률편>에 율사스님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율(持律)은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승단의 지도자는 각종 갈마를 여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이를 명률(明律)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평생의 지사를 모시고 수행해야 한다.

냉정히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계율관련 역량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여법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교육과정은 적어도 구족계를 받고 최소 5년까지는 계율을 정미롭게 공부하도록 강조하셨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율원에서 율장을 연구하고 후학을 지도하며 느끼기에도 5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언어에 문제가 없고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5년이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5년이라도 계율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조계종단의 경우 기본교육과정에서 개론수업 1과목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에 율원을 지원하는 스님은 현재 10%미만이다. 90% 이상이 개론수업 1과목과 구족계수계산림 9일 동안이 계율교육의 전부일 수가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여법과 비법을 구분하고 여법하게 갈마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겠는가?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다. 체계적인 계율교육이 부족

한 상태에서 청구나 종헌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제도를 선득도 후교육 제도로 바꾸고 올윈과정을 선택이 아닌 의무과정으로 편성해서 누구나 이 시대의 여법한 지도자가 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후자는 출가연령이 높아서 시간이 없다고도 하지만 급할수록 꼭 필요한 내용을 익히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출가의 본뜻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법한 승단운영을 위해서는 계율에 밝은 지도자의 배출이 중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번역서 포함)

- 『四分律行事鈔』
- 『四分律資持記』
- 『四分律藏』: 大正22.
- 『大方等大集經』: 大正13.
- 『大智度論』: 大正25.
- 『思益梵天所問經』: 大正15.
- 『毘尼母經』: 大正24.
- 『十誦律藏』: 大正23.
- 『五分律藏』: 大正22.
- 『薩婆多毘尼毘婆沙』: 大正23.

The Role of a Leader in the Realization of the Harmony of a Buddhist Order

Ven. Deokmun

Dean of the Yeongchuk Sangha Graduate School of Vinaya

This study examined what condition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operate a Buddhist order in harmony and what conditions a leader of a Buddhist order should be equipped with, focusing on Sabunyulsahaengcho by Ven. Doseon and Sabunyuljajigi by Ven. Wonjo.

For a Buddhist order to complete its role in harmony, maintaining the state of undefilement free from earthly desire and evil is important. Here, the pureness of members and of the bodhimanda is indispensable for realizing a harmonious Sangha. Based on this condition, the role of a leader who conducts kamma in accordance with Dharma and Vinaya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a harmonious Sangha.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a leader, considered useful measures to prevent breaking the precepts, and examined how to discipline those who break the precept by denying their conducting kamma (舉羯磨) and how to forgive them when they repent their misconduct by admitting their kamma (解羯磨). In addition, this paper also looked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ngha system in the time of Buddha and the present one through non-Dharma kamma in the distribution of offerings and monastic system(僧制).

Sabunyulsahaengcho of Ven. Doseon suggests various systematic help useful to maintain a clean Sangha and Sabunyuljajigi of Ven. Wonjo succeeded to the principle. These books have seldom been used in Chinese Buddhism and Korean Buddhism since the Song Dynasty. However, Ven. Hongil (弘一) of the Republic of

China left a book, Sabunyulsaengchojajigibusangjipsek (四分律行事鈔資持記扶桑集釋), of which principle became the foundation of many Taiwanese temples of vinaya that were newly established and have been operated following it. The revitalization of Taiwan Buddhism deserves our envy and the basis of the revitalization was laid by Sabunyulsaengcho and Jajigi. I hope that Korean Buddhism will realize a harmonious Sangha and will honor Sangha with appreciation and respect as the result of further research.

Keywords

Order(敎團), Sangha(僧團), A part of the ordination ritual not conforming to Dharma, Harmony(和合), Limiting the monks' food, clothing and shelter when practicing Buddhism(結界), Repenting sin and seeking forgiveness(出罪), separate Sangha (別衆), Monk(和尚), Master of a junior monk(依止師), Reference to a part of the ordination ritual(擧羯磨)

2017년 08월 08일 투고
2017년 09월 08일 심사완료
2017년 09월 09일 게재확정

